

제 14 장 분쟁해결

제 1 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 14.1 조 목적

이 장은 이 협정의 신의성실한 적용에 관한 양 당사자 간 분쟁을 회피하고 해결하며 가능한 경우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¹⁾

제 2 절 협의

제 14.3 조 협의

1)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와 관련되는 분쟁에 대하여, 이 장에서 무역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문화협력 위원회를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1.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협의에 임함으로써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문제가 되는 조치와 적용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이 협정의 규정을 적시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요청으로 협의를 구한다. 협의 요청서의 사본은 무역위원회에 전달된다.

3. 협의는 요청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자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양 당사자가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요청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의하는 동안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된다.

4.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²⁾에 관한 것을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한 협의는 요청의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고, 요청의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각각 규정된 기한 내에 협의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나, 협의가 종결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제소 당사자는 제14.4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 절 분쟁해결절차

제 1 관 중재절차

2) 계절 상품이란, 그 수입이 대표적인 기간 중, 연중 분산되지 아니하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그 해의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상품이다.

제 14.4 조 중재절차 개시

1. 양 당사자가 제14.3조에 규정된 협의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은 피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한다. 제소 당사자는,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그 요청에 적시하고, 그러한 조치가 어떻게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의 위반을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14.5 조 중재패널 설치

1. 중재패널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2. 무역위원회에 중재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구성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협의한다.

3. 양 당사자가 제2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패널의 구성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무역위원회 의장이나 의장의 대리인에게, 제14.18조에 따라 작성된 명부에서 추첨으로 제소 당사자가 제안한 개인 중 1인, 피소 당사자가 제안한 개인 중 1인과 의장 역할을 하도록 양 당사자가 선정한 개인 중 1인으로 된, 모두 3인의 구성원을 선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중재패널 구성원에 합의하는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동일한 절차로 선정된다.

4.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3인의 중재인이 선정된 날이다.

제 14.6 조 패널 잠정보고서

1.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실의 조사결과,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중재패널이 내린 조사결과 및 권고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하는 잠정보고서를 양 당사자에게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의 의장은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잠정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어떠한 당사자도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특정 측면을 검토하도록 잠정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과 관련되는 것을 포함한 긴급사건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기간의 절반 이내에, 중재패널은 잠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특정 측면을 검토하도록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4. 잠정보고서에 관한 양 당사자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최종 중재패널 판정은 중간 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진 주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제 14.7 조 중재패널판정

1.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120일 이내에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판정을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의 의장은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판

정을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판정은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5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과 관련되는 것을 포함한 긴급사건의 경우, 중재패널은 그 설치일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을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설치 후 75일을 초과하여 소요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중재패널은 그 사건을 긴급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관한 예비 판정을 그 설치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릴 수 있다.

제 2 관 이행

제 14.8 조 중재패널 판정의 이행

각 당사자는 중재패널 판정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양 당사자는 그 판정을 이행하는 기간에 대해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제 14.9 조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

1. 양 당사자에게 중재패널 판정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피소 당사자는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통보한다.

2.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할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도록 피소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행한 통보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한다. 그러한 요청은 다른 쪽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중재패널은 요청의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판정을 제출한다.

3. 원 중재패널의 어느 한 구성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5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판정을 제출하는 기한은 제2항에 언급된 요청의 제출일부터 35일이다.

4. 피소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중재패널 판정의 이행에 대한 진전 상황을 제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줄 것이다.

5.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제 14.10 조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

1. 피소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통보한다.

2. 조치의 존재나,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의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과의 합치에 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그 사안에 대해 판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에는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가 적시되고, 그러한 조치가 어떻게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과 양립불가능한지 설명된다. 중재패널은 요청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제출한다.

3. 원 중재패널의 어느 한 구성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5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판정을 제출하는 기한은 제2항에 언급된 요청의 제출일부터 60일이다.

제 14.11 조 불이행의 경우 일시적 구제

1. 피소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통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제14.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그 당사자의 의무에 불합치한다고 중재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피소 당사자는, 제소 당사자가 그렇게 요청할 경우, 일시적 보상에 대한 제안을 한다.

2.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제14.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에 불합치한다는 제14.10조에 따른 중재패널 판정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제소 당사자는 그 위반으로 야기된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14.2조에 언급된 모든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정지할 권한을 피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하는 즉시 갖는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자가 정지하고자 하는 의무의 수준이 명시된다. 피소 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중재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소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후 그 정지를 시행할 수 있다.

3. 의무를 정지함에 있어 제소 당사자는 관세율의 인상으로 곱해진 무역량이 그 위반으로 야기된 무효화 또는 침해의 가치와 같게 되도록 결정되는 무역량에 대하여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정지의 수준이 그 위반으로 야기된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피소 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그 사안을 판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제2항에서 언급된 10일의 기간 만료 전에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원 중재패널

은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의무의 정지 수준에 대한 판정을 그 요청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원 중재패널이 판정을 제출하기 전까지 의무가 정지되어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정지도 중재패널 판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5. 원 중재패널의 어느 한 구성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5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그 판정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4항에 언급된 요청의 제출일부터 45일이다.

6. 의무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고,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에 불합치하다고 판명된 조치가 제14.12조에 따라 정하여진 대로 그러한 규정에 합치되도록 철회 또는 개정된 때 까지, 또는 양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을 때까지만 적용된다.

제 14.12 조

의무의 정지 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

1. 피소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제소 당사자가 신청한 의무의 정지에 대한 종료 요청을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한다.

2. 통보된 조치의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과의 양립가능성에 관하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그 사안을 판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그러한 요청은 피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중재패널 판정은 그 요청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제출된다.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에 합치된다고 중재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의무의 정지가 종료된다.

3. 원 중재패널의 어느 한 구성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5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그 판정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2항에 언급된 요청의 제출일로부터 60일이다.

제 3 관 공통 규정

제 14.13 조 상호 합의된 해결

양 당사자는 언제라도 이 장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를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모든 그러한 해결책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한다.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통보되는 즉시, 절차는 종료된다.

제 14.14 조 절차 규칙

1.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14-나의 규율을 받는다.
2. 중재패널의 모든 심리는 부속서 14-나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다.

제 14.15 조 정보 및 기술적 조언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를 포함하여 중재패널 절차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또한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전문가의 관련 의견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획득된 정보는 양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양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양 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부속서 14-나에 따라 외부조언자의 의견서를 중재패널에 제출하는 것이 승인된다.

제 14.16 조 해석 규칙

중재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성문화된 규칙을 포함한 국제 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을 해석한다. 이 협정상의 의무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의무와 동일한 경우, 중재패널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이하 “분쟁해결기구”라 한다)의 판정에서 수립된 관련 해석과 합치하는 해석을 채택한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제14.2조에 언급된 조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제 14.17 조 중재패널 결정 및 판정

1. 중재패널은 컨센서스로 결정을 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로 결정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되는 사안은 다수결로 결정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인의 반대의견은 공표되지 아니한다.

2. 중재패널의 판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고,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판정은 사실의 조사결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조사결과 및 결론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판정을 전부 공개한다.

제 4 절 일반 규정

제 14.18 조 중재인 명부

1.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중재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15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개인 5인을 제안한다. 양 당사자는 또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아니면서 중재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5인을 선정한다. 무역위원회는 그 명부가 이 수준으로 항상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2. 중재인은 법과 국제무역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다.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조직이나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어떠한 당사자 정부와 연계되지 아니하고, 부속서 14-다를 준수한다.

제 14.19 조 세계무역기구 의무와의 관계

1. 이 장의 분쟁해결 규정의 이용은, 분쟁해결 조치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의 어떠한 조치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특정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 장 또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중 어느 한 쪽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첫 번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쪽 포럼에서 동일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당사자는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상 동일한 의무의 시정을 그 두 포럼에서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경우에 하나의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면, 선택된 포럼이 절차적 또는 관할적인 이유로 그 의무의 시정을 구하는 주장에 대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협정상의 동일한 의무의 시정을 구하려는 주장을 다른 쪽 포럼에서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항의 목적상,

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부속서 2에 포함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당사자의 패널 설치 요청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분쟁해결기구가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6조 및 제17.14조에 따라, 각 경우에 맞게,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를 채택하는 때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나.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제14.4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중재패널 설치 요청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중재패널이 제14.7조에 따라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판정을 제출하는 때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한 의무의 정지를 이행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은 당사자가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정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용되지 아니한다.

제 14.20 조 기한

1. 중재패널이 판정을 제출하는 기한을 포함하여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한은 달력상의 일로 기산되고, 첫째 날은 그 기한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날이 된다.

2. 이 장에 언급된 어떠한 기한도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